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2. 5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(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), 제28조(반환명령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(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)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이○일	'98.01.15.	전남 광양시 가야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,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등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(500,000원), 3회차 ~ 4회차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액(1,000,000원),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○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4. 2. 5. ~ 2024. 2. 19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광양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수현(Tel. 061-798-1920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